



보건사회부

사본

보건위 1435

1966. 6. 7.

수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7번지(벨딩 601호)

재한 일본인 유골 안치위원회 위원장 김용주

제목 건의서에 대한 회신

1. 1966. 2. 24.자로 제출하신 귀하의 건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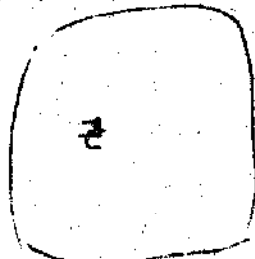
가. 건의 "1"에 대하여 재한 일본인 유골 처리에 있어서는 일본측 위원회와 제휴하여 유언고 유골이나 무언고 유골을 막론하고 귀 위원회에서 직접 관계 하신 유골만을 일괄 처리 하실것.

나. 건의 "2"에 대하여 언고 대리인을 "이홍열"로 한다함에 있어서는 유골의 처리문제 책임이 귀위원회에 있는것이므로 이를 사회적 으로 보장할수 있는 인사인 김전식의원 명의로 하여 동 수집 이장의 조치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실것.

다. 건의 "3"에 대하여 동유골처리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하의 한일관계를 고려할때 어디까지나 정부의 자취감독이 이어야 할 것임.

2. 이상과 같이 일본인 유골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특히 국제적인 외교정책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외 이송등에 문제가 있을때에는 외무부에 문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보건사회부장 권



第

保健社會部

保健卷 1435

受信: ソウル特別市忠清南大路4街17番地

(ビルディング 601号)

在韓日本(遺骨安置委員會)委員長

召号す

題目: 建議書に対する回答

1. 1966年2月24日付の提出に貴下。建議書に

に対し、通し回答を。

2. 建議書に、在韓日本人遺骨処理に

取組む日本側委員会の提携の有様

が遺骨に無縁故遺骨の肉焼貴委員会

2. 直接関係は遺骨処理一括処理を

こと。

1. 建議"2"に従い、事故代理人を李興烈

に委託しおこなう遺骨処理問題責任の

貴委員会におかれ、これ社会的に保障を

する人である吉典種議員各儀に、同意

集特等、措置を合法的に処理すること。

3. 建議"3"に従い、同遺骨処理におこな

民間事業として推進されること、現下の

日韓関係を考慮するに、これにまつ政府の

指揮監督がなされること。

2. 以上の如く、日本人遺骨の処理が、この  
如く、特に国際的の外交政策に伴う  
べからず、海外移送の問題、あり  
際、外務部と同様に処理がよろ  
願う。

保健社会部長官